

의안번호	2202839
의 퇴 인	김건 의원
회 답 일	2024. 8. 14.
추계번호	24F20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9조의8 (통합고용세액공제)	○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- 기업의 상시근로자*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법인·소득세 공제 ※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. 단,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시간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- 공제율: (현행) 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 등 1인당 400~1,550만원 / 그 외 상시근로자 1인당 450~950만원 (개정안) 청년 정규직, 장애인, 60세 이상, 경력단절여성, 북한이탈주민 등 1인당 400~1,550만원 / 그 외 상시근로자 1인당 450~950만원 - 적용기한: 2025년 12월 31일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9조의8 (통합고용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고용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경우 법인·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법인·소득세를 공제하며, ‘청년 등 상시근로자’ 수가 증가하는 경우 기본

공제율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

- 현행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대상은 청년(15~34세) 정규직 근로자, 장애인 근로자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상이자, 60세 이상 근로자, 경력단절 여성 등임
- 개정안은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대상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

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의 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증대 여부 및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
- 참고로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및 종사상지위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비율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

(단위: 명)

	~'19	'20	'21	'22	'23	'24.6 (잠정)	누적
입국인원	33,523	229	63	67	196	105	34,183

자료: 통일부 제출자료

[표 4] 종사상지위별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비율: 2023년

(단위: %)

	임금근로자				비임금근로자		
	소계	상용직 근로자	임시직 근로자	일용직 근로자	소계	자영업자	무급가족 종사자
취업자 중 종사상지위별 비중	81.4	56.6	12.0	12.7	18.6	17.8	0.9

자료: 남북하나재단, 「2023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」, 2023.12.

- 그러나 향후 고용을 증대시킬 기업의 북한이탈주민 고용증대 여부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고은비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고은비	02-6788-4839	eunbi15@assembly.go.kr